

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최봉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2. 20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97호로 2023년 2월 9일 최봉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, 「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·청소년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,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교육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범위(안 제5조~제6조)

라.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~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교육기본법」,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
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.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.

라. 입법예고(2023.2.10.~2.14./5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어린이·청소년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됨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및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
- 안 제3조(책무)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교육·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함.
- 안 제5조(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)에서는 교육안전 지원 기본

방향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**교육안전지원 계획**을 구청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,

- **안 제7조(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 등)**에서는 교육안전 지원 종합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안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교육안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안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우리사회에서 안전문제가 반복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됨.

다만,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를 2015년 4월에 제정하여 운영, 우리구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를 운영 중에 있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교육기관 간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교육기본법

제17조의5(안전사고 예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0.]

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. 29.>